##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69

발의연월일: 2021. 7. 1.

발 의 자:정정순・양정숙・윤재갑

송옥주·정일영·김승남

임호선 · 이장섭 · 윤준병

김교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지급대상의 요건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에 이용되 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 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 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 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u>.</u>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	
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 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거나 논농업에 이용 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종전의 「농업소 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_\_\_\_\_

\_\_\_\_\_

----.

가. · 나. (현행과 같음)

\_\_\_\_\_

가. • 나. (생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 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u>경우 또는 20</u>
<u>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u>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
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
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밭농업에 이용되었
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밭농
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인정하는 경우</u>

가. • 나. (생 략)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3
<u>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u>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
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
득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